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과 관련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대두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185,787톤에서 195,787톤으로 늘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6. 7. 13. ~ 7.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품목번호 1202란 앞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품목번호	품명	2026년 시장접근물량		
		현행물량 (A)	증량물량 (B)	계 (A+B)
1201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85,787톤	10,000톤	195,787톤
1201	10 종자			
	1000 콩나물용			
	9000 기타			
1201	90 기타			
	3000 콩나물용			
	9000 기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